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의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조정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고, 조세심판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직렬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세무 복수직렬 정원으로 조정하며, 신기술·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4.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31명”을 “34명”으로, “17명”을 “20명”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8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85”를 “289”로 하고, 일반직 계 “282”를 “286”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을 “11”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7”을 “3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85”를 “289”로 하고, 일반직 계 “282”를 “286”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을 “11”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7”을 “30”으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서기보 3”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 “3”을 “6”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행정서기보 3”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 “2”를 “5”로 한다.

별표 2의5 제1호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제조정실 1개 과	4명 (4급 1명, 5급 3명)	2024년 9월 30일까지
---------------	----------------------	----------------

별표 4 제2호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31명</u> (4급 2명, 4급 또는 5급 12명, 5급 <u>17명</u>)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34명</u> ----- ----- <u>20명</u> ----- ----- -----. ----- -----.
제25조(한시정원) ① (생략) ② 삭제 ③ 신기술·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4월 30일까지</u>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무조정실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	제25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③ ----- ----- ----- ----- -- <u>2022년 8월 31일</u> ----- ----- ----- ----- ----- -----.

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 리 협의해야 한다. ④ (생 략)	----- ----- -----. ④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85</u>	<u>289</u>	+4
·	·	·	
·	·	·	
일반직 계	<u>282</u>	<u>286</u>	+4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0</u>	<u>11</u>	+1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 무관 · 공업사무관 · 농 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 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 신사무관 또는 기록연 구관	<u>27</u>	<u>30</u>	+3
·	·	·	
·	·	·	

[별표 1의2]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85</u>	<u>289</u>	+4
•	•	•	
•	•	•	
일반직 계	<u>282</u>	<u>286</u>	+4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0</u>	<u>11</u>	+1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 무관 · 공업사무관 · 농 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 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 신사무관 또는 기록연 구관	<u>27</u>	<u>30</u>	+3
•	•	•	
•	•	•	

[별표 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	•	•	
<u>행정서기보</u>	<u>3</u>	<u><삭 제></u>	-3
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u>3</u>	<u>6</u>	+3
•	•	•	
•	•	•	

[별표 2의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서기보</u>	<u>3</u>	<u><삭 제></u>	-3
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u>2</u>	<u>5</u>	+3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3